

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개정령안

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 또는 도지사”를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”로 한다.

제4조 중 “법 제40조제4항”을 “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0조제4항”으로, “특별시·광역시·도”를 “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”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“(각 위원회의 기능)”을“(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기능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“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”를 “치료보호”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“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”를 “치료보호”로 한다.

- 4. 치료보호의 시작·종료와 치료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(입·퇴원 및 입원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포함)

제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”를 “치료보호”로 한다.

- 2. 치료보호의 시작·종료와 치료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(입·퇴원 및 입원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포함)

제6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“정신보건업무”를 각각 “정신건강증진 업무”로 한다.

제9조의 제목“(마약류중독자 등의 입원 통보 및 입원 신청)”을“(치료보호 및 판별검사 의뢰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치료보호기관에 해당 중독자등의 입원을 의뢰”를 “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를 의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알려야 한다.”를 “알리고, 그 중독자등에게 치료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.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배우자·직계존속·법정대리인은 중독자등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를 위하여”를 “배우자·직계존속·법정대리인은”으로, “치료보호기관에의 입원을”을 “치료보호 및 판별검사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입원 의뢰·통보 및 입원 신청”을 “의뢰·통보 및 신청”으로 한다.

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0조(치료보호) ①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의 의뢰 및 같은 조 제3항의 신청을 받으면 그 치료보호기관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에게 중앙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도록 요청해야 한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통보, 같은 조 제3항의 신청 또는 이 조 제1항의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중앙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심

의를 거친 후 지체 없이 중독자등에 대한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를 해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 전에 심의를 거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 후에 지체 없이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를 위하여 중독자등을 입원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입원의 일시·장소 및 그 사유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알리고,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.

1. 제9조제3항에 따라 중독자등의 배우자·직계존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를 신청한 경우: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를 신청한 사람
2. 제1호 외의 경우: 해당 중독자등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만 그 다음 순위자에게 알릴 수 있다.

- 가. 배우자
- 나. 부모
- 다. 부모 외의 직계존속
- 라. 법정대리인

⑤ 제2항의 심의에서 해당 중독자등을 치료보호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심의를 거치기 전에 치료보호한 비용을 국가 또는 시·도가 부담한다.

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제10조제1항에 따라 입원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판별검사를 하여야 한다”를 “제9조제1항의 의뢰 및 같은 조 제3항의 신청에 따라 판별검사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”로 한다.

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의 의뢰에 따라 판별검사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에게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. 제15조제1항 전단 중 “치료보호기관에 입원 조치하여 치료보호를 할 수 있다”를 “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아니할”을 “않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아니하다고”를 “않다고”로, “치료보호기관에 입원 조치를 할 것”을 “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할 것”으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아니하고 입원 조치할 수 있다”를 “않을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16조제1항 중 “입원을”을 “치료보호를”로, “보고하여야”를 “보고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제1항에 따라 보고를”을 “제1항의 보고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총치료보호기간”을 “총 치료보호기간”으로, “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각 위원회의 심의”를 “제10조제2항의 심의”로, “치료보호기관에 입원시킨”을 “치료보호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제10조제3항에 따른 통보대상자”를 “제10조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2항 중 “제9조제1항에 따른 검사의 입원 의뢰에 따라 치료보호

기관에 입원시킨 사람에 대하여는”을 “제9조제1항의 의뢰에 따라 치료 보호한 경우에는”으로, “입원을 의뢰한 검사”를 “해당 검사”로 한다.

제18조의 제목“(퇴원 조치)”를“(치료보호의 종료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치료보호기관에 입원한 사람”을 “치료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”으로, “퇴원 조치를 하여야”를 “치료보호를 종료해야”로 하며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보고하여야”를 “보고해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퇴원을”을 “치료보호의 종료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퇴원 조치된 사람에게 퇴원한 날부터”를 “치료보호가 종료된 사람에게 종료일부터”로, “치료를 받았던 그 치료보호기관에서”를 “치료보호기관에서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